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461
----------	------

2016년 12월 1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 : 2016년 10월 31일
- 다. 회부일 : 2016년 11월 3일
- 라. 상정일 : 제271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 12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평생교육정책관 김용복)

가. 제안 이유

-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확산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관련법령
 - (공통)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 조 례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3,499,000천원
(인건비 1,033,991, 운영경비 626,345, 사업비 1,794,480, 예비비 44,184)

다. 주요사업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형 융·복합 평생학습 정책개발, 서울형 평생학습지수 개발,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가칭)모두의 학교 운영 등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연계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강화
 - 평생교육 추진체계 활성화 및 공동사업,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등
- 평생교육 정보 관리 및 제공으로 시민참여 확산, 평생학습 대중화 실현
 -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등

라.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한 태 식)

-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2014.5.28.개정)됨에 따라,¹⁾ 2017년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임.
- 평생교육진흥원은 관련법령(「교육기본법」 제3조²⁾, 「평생교육법」 제20조³⁾,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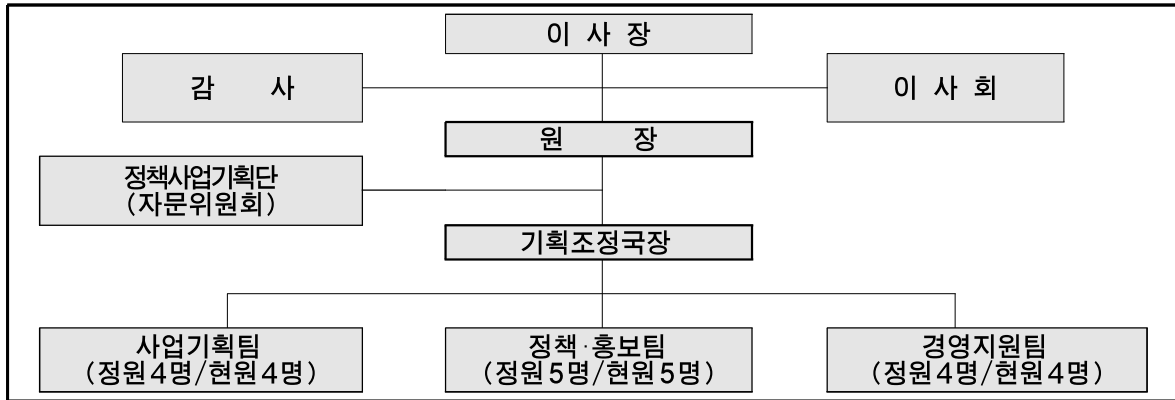
2) 「교육기본법」 제3조(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

3) 「평생교육법」 제20조(시·도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 ①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

한 조례」)에 따라 평생교육의 기회보장, 자유로운 학습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에 조력하며,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그에 상응하는 자격 및 학력인정 등 사회적 대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사회는 상근임원(원장, 1명)과 비상근임원(12명, 감사2명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업계획, 자산의 취득·처분, 정관, 법인,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 조직 및 인력 현황 >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연혁 >

2015.03.	진흥원 이사 및 감사 임명, 흥원 재단법인 설립(독립법인)
2015.04.	사무실 확장 이전(서초구 → 마포구)
2015.07.	한국교육개발원 업무협약
2015.10.	평생교육사협회 업무협약
2014.0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개원
2014.10.	법인설립 준비 위원회 창립 총회 개최
2013.12.	「서울시 평생교육협의회」 흥원 지정 운영 승인

○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은 2015년 4월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여 13명의 이사(상임-1명, 비상임 12명)와 1국 3팀 18명으로 구성되어 평생학습 거버넌스구축, 혁신전략 및 정책개발, 일상학습문화 활성화 및 인지도 제고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의 2016년 사업예산은 총 23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2016년 10월말 기준 예산집행률은 61%로, 지출원인행위 후 예산미집행으로 집행율이 낮지만 연말까지는 100%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인건비와 운영경비의 지출이 비정상적으로 낮아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음.

※ 인건비의 경우 월별지출의 편차가 적은 항목으로 10월말 현재 83% 전후의 집행율을 보이는 것이 정상이나 71%만이 집행되어 정상적이지 않은 집행을 보이고 있음.

< 2016년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집행현황, 10월말 기준 >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집행액 (10월 말)	집행률 (10월 말)	예산집행률 (12월 말)
비목					
평생교육진흥원		2,320,000	1,479,431	61%	100%
일반관리비		1,523,510	1,031,188	65%	100%
	인건비	852,241	603,665	71%	100%
	운영경비	671,269	427,523	60%	100%
사업비		796,490	448,243	56%	100%
	평생학습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	224,000	123,684	51%	100%
	일상에서의 학습문화 활성화	225,000	162,441	73%	100%
	평생학습 혁신전략 및 정책 개발	237,000	94,302	40%	100%
	평생학습 대중화 기획	110,490	67,816	61%	100%

- 2016년 사업비의 경우 결산시 100%의 지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으나 10월말 기준 집행 원인행위는 84.2%(지출은 56.8%)에 불과하여 예산의 비효율적 집행의 대표적인 예시인 ‘연말 몰아 쓰기’가 예상되는 바, 평생교육진흥원의 적시에 목적이 맞는 예산집행을 위한 신중한 예산집행 계획수립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6년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사업비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2016년 10월말 기준)

예산과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원인행위	지출액	원인행위	지출액
사업비	796,490	605,943	408,341	84.2%	56.8%

- 평생교육정책관은 2017년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금으로 2016년 예산(23억원) 대비 13억원(52.1%)이 증가한 3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출연금 중 사업비와 인건비 부분은 증액 편성하고 있음.

※ 인건비는 ① 3명의 신규채용으로 인한 증가분. ② 2017년 경영평가 대상이 되면서 성과급책정으로 9천2백만원, ③ 퇴직급여 총당금 6천7백만원이 포함되어 2억9천4백만원이 증액됨.

※ 사업비는 모두의학교(금천구, 한울중학교 부지활용, 평생학습 복합공간, 2017년 8월 개교예정)를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게 되어 운영비(인건비(3명) 및 인테리어비용 등 포함) 8억1천9백만원 등 사업예산이 11억1천9백만원이 증가된 18억9천5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평생교육진흥원 2017년도 출연연금 예산편성(안)

(단위:천원)

항목	2016년 예산	2017년 예산(안)	증액분
출연금	2,300,000	3,499,000	1,199,000
인건비	739,241	1,033,991	294,750
운영경비	671,269	626,345	△44,924
사업비	776,490	1,794,480	1,107,990
예비비	113,000	44,184	△68,816

- 2016년은 평생교육진흥원 출범이후 본격적 사업추진의 원년으로 시범사업 및 정책개발, 운영기반 구축, 평생교육네트워크 구축사업 등을 수행했으며,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 기능 수행과 지역의 평생학습 활성화 촉진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의 출연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다만,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의 본질회복, 학력사회의 한계 극복, 지식 기반사회에 대한 대응, 지역구성원을 공동체로 묶는 역할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평생교육진흥원의 2017년 사업추진계획을 보면, 단기적 대중화에 평생교육진흥원의 역량이 집중되고 있어, 평생교육진흥원의 본질적 기능 강화 및 내실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음.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461
----------	------

제출년월일 : 2016년 10월 3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市 평생교육 정책에 따른 전문적인 사업 수행체계를 마련하여 평생교육 진흥 및 확산시키고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을 운영하고 있음
- 나. 이에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17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개요

- 대상기관 : (재)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 관련법령
 - (공동)법령 :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개별)법령 : 「평생교육법」
 - 조 레 :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 출연금액 : 3,499,000천원
(인건비 1,033,991, 운영경비 626,345, 사업비 1,794,480, 예비비 44,184)

나. 주요사업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운영
 - 서울형 융·복합 평생학습 정책개발, 서울형 평생학습지수 개발, 1인 1자율학습모임 활성화, (가칭)모두의 학교 운영 등
-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연계 구축을 통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강화
 - 평생교육 추진체계 활성화 및 공동사업, 지역 평생교육 컨설팅, 평생학습 관계자 역량강화 등
- 평생교육 정보 관리 및 제공으로 시민참여 확산, 평생학습 대중화 실현
 - 평생교육기관 및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 시민 참여형 평생학습 캠페인 등

다. 출연의 필요성

-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수행의 컨트롤타워 및 허브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지원하고,
-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서울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및 지역 평생학습 사업 추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서울형 평생학습을 구현하기 위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17년도 예산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평생교육담당관 평생교육기획팀 오무오(☎2133-3967)